

일본의 유기식품 생산 및 관리제도 현황과 전망

정 만 철*

The Status and Prospects of Japanese Organic Foods System

Jung, Man-Chul

Japan launched its regulatory certification system for organic foods based on the amended JAS laws in June 2000, followed by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n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and organic processed foods in January 2001 an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s on organic animal husbandry and organic fe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in 2005, organic foods have been under integrated and systematic supervision. Certification of organic foods can be undertaken by registered accredited bodies (private certification bodies) or legal entities conform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However, with the amendment of the JAS laws in March 2006, only legal entities conform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ISO/IEC GUIDE 65 are eligible as certification bodies. Foreign organic products imported to Japan must be certified organic under JAS regulations and must be manufactured or produced by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ed by local or foreign registered accredited organizations and distributed with the Organic JAS Mark affixed or through importers certified by local registered accredited organizations and distributed with the Organic JAS Mark affixed on the products. It can be implied from the Japanese case study that it necessary to reform the diverse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 systems to set up an integrated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restructuring of government organizations, reforms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integration of the organic food certification systems are needed in order to integrate the control of th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Key words : *organic food, Japan, organic JAS, certification systems*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선임연구원

I. 서 론

최근 우리 정부는 이원화 되어 있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관리 제도를 통합해 새로운 유기식품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어 유기식품 전체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2008년 6월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인증제도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Codex위원회나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유기식품에 대한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기식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한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단일 법률체계 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기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관리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어 유기식품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외국과의 정합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수입 및 외국의 검사·인증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미국과 호주 등의 국가로부터 유기식품의 기준에 대한 동등성 협정 체결에 대한 요구가 들어와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동등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유기식품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0년 6월 JAS법(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2001년부터 본격적인 유기식품에 대한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또한 유기JAS 제도 시행 이후의 유기식품 생산 및 인증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변화를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유기식품 동향 및 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유기식품 관리제도의 방향 설정에 유익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본의 유기JAS제도에 대한 문헌조사 및 법령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및 일본유기농업연구회, 민간인증기관(JONA, 효고현유기농업연구회 등) 등의 담당자·전문가에 대해서는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유기농업정책 및 제도 현황(유기JAS제도를 중심으로)

1. 유기농업 관련 정책 변화의 배경 및 경과

1970년대 초반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시작된 유기농업운동은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와 농산물시장의 왜곡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 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유기농산물 등의 유기식품이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먹을거리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의 표시가 범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농산물을 선택함에 있어 혼란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1991년부터 CODEX위원회(FAO/WHO합동 식품규격위원회)에서 유기식품에 관한 가이드라

〈표 1〉 일본 정부의 유기농업 정책 동향

| 구분 | 일본 동향 | 국제 동향 |
|--------|---|--|
| 1980년대 | 1987 자민당 ‘유기농업연구의원동맹’ 결성 농업백서에서 처음으로 ‘유기농업’ 언급 1989 ‘유기농업대책실’ 설치 | |
| 1990년대 | 1992 ‘유기농업대책실’을 ‘환경보전형농업대책실’로 확대 개편(4월) ‘신정책’ 발표(6월) 농수성 ‘유기농산물 등에 관한 청과물 등 특별표시가이드라인’ 제정 1996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에 관한 표시가이드라인’으로 개칭 1999 ‘식료·농업·농촌기본법(신기본법) 제정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지속농업법)’ 제정 JAS법 개정 | 1991 CODEX위원회에서 유기식품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검토 작업 시작 1997 한국·환경농업육성법 제정 1999 CODEX위원회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채택 |
| 2000년대 | 2000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규격 제정 2001 유기인증제도 시행 2005 ‘유기JAS법’ 개정(유기축산물, 유기사료 기준 제정) 2006 ‘유기JAS법’ 시행(3. 1부터) 인증기관 자격 변경 ^{주)} (3월) ‘유기농업추진법’ 제정(12월) | 2004 유럽위원회 ‘유기농식품과 농법에 관한 EU 행동강령’ 채택(6월) 2007 ‘유기식품의 생산과 표시를 위한 EC 규정(No 834/2007)’ 제정(6월) |

주 : 인증기관의 자격을 농림수산물 기준에서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ISO/IEC GUIDE 65)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격 이상의 기관으로 변경

자료 : 필자 작성

인 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1991년부터 유기식품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1992년 10월 「유기농산물 등에 관한 청과물 등 특별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1996년 12월에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에 관한 표시가이드라인」으로 개정하면서 유기농산물과 특별재배농산물(무농약, 감농약, 감화학비료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유기JAS규격 제정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JAS법 개정 이후 유기식품에 관한 인증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2000년 6월 개정JAS법에 의거한 유기식품의 기준·인증 제도를 발족시키게 되었다. 2001년 1월에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규격을 제정하면서 유기인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2005년도에는 유기축산물과 유기사료에 대한 일본농림규격도 제정되어 유기식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기식품에 관한 일본농림규격은 주로 Codex위원회의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있다. 유기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기농산물(축산물, 가공식품 포함)’과 ‘특별재배농산물’의 관리를 분리하게 되어 유기인증은 유기JAS규격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특별재배농산물 인증은 중앙정부가 제정한 ‘특별재배농산물에 관한 표시가이드라인’에 의거해 현(縣)단위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다.

| 구 분 | 무농약 | 감농약 |
|-------|-------|-----|
| 무화학비료 | 유기농산물 | 농산물 |
| 감화학비료 | 특별재배 | |

〈그림 1〉 유기농산물과 특별재배농산물의 구분

특별재배농산물의 경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형농업」의 틀 안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의지와 잠재력을 지닌 생산자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보전형농업 추진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에코파머(eco farmer) 제도」의 추진이다. 에코파머는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1999년 제정)을 근거로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에코파머는 ①퇴비나 녹비작물을 이용한 지력관리, ②화학비료 저감기술, ③화학농약 저감기술 등 세 가지 기술을 종합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농가로 친환경적이면서 농지의 생산력을 유지·보전하려는 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농업인이다. 2009년 9월 현재 에코파머로 인증을 받은 농가는 191,846농가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작목별로는 벼가 약 40%, 채소 35%, 과수 19% 등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6년 12월에는 유기농업의 종합적인 생산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유기농업추

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본 법은 정당을 초월해 결성된 의원연맹인 유기농업추진의원 연맹¹⁾의 제안으로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유기농업추진법을 근거로 ‘지역유기농업추진사업(모델타운 사업)’을 비롯해 후계자 양성 및 기초데이터 조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유기JAS제도를 통한 유기식품의 관리

1) 인증의 대상(인정사업자) 및 품목

JAS법에 의거해 실제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해 「유기」식품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인정사업자)는 등록인정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함)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정사업자에는 생산행정관리자(生産行程管理者 ; ‘생산자’라 함) 및 가공식품 제조업자, 소분업자, 수입업자 등이 있다.

우선 유기농산물 생산자(해외 생산자 포함)는 실제로 농산물의 생산행정(과정)을 관리하고 이를 파악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유기농산물의 경우 생산농가나 생산자조합 등이 이에 해당됨). 둘째, 제조업자는 인증기관의 인정을 받아 유기가공식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자를 말한다. 생산자 및 가공식품 제조업자(해외 제조업자 포함)는 인증기관의 인정을 받아 생산 또는 제조하는 유기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대해 유기JAS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셋째, 소분업자는 벌크 또는 박스단위로 입하된 농산물을 소분하여 소포장 등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유기농산물의 유통에 있어 유기JAS마크가 부착된 농산물을 소매용 소포장으로 소분하는 경우 소분 후에도 유기농산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소분업자(해외 소분업자 포함)가 유기JAS마크를 재 부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소분업자는 사업장 및 농림물자의 종류별로 인증기관의 인정을 받아 유기JAS마크의 재 부착 등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입업자는 유기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자를 말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수입된 유기식품에 유기JAS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의 유기JAS제도와 동등한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으로, 이에 대한 해당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현재 유기JAS제도에 있어서 인증 대상이 되는 품목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기준은 2000년 1월, 유기축산물과 유기사료는 2005년 10월에 제정되었다. 인증대상 품목의 JAS기준은 Codex위원회와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기준을 참고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1) 유기농업추진의원연맹은 일본유기농업학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당과 관계없이 유기농업의 추진에 뜻을 같이하고자 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2006년 11월 9일 결성되었으며, 중의원과 참의원 소속 국회의원 161명이 참가하고 있다. 당시 의원연맹의 회장은 자민당(自民党)의 야츠 요시오(谷津 義男)의원이며, 사무국장은 민주당의 츠루넨 마루티의원이 맡았다.

있다.

다만 유기식품의 기준에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유전자 변형기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의도적인 혼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유기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유기 가공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5% 이하의 비유기 원료라고 해도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판별하는 것이 어려워 일반 가공식품과 같이 「비의도적 혼입」²⁾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품의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 원료가 혼입되어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 인증기관은 생산 과정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유전자변형 원료를 의도적으로 혼입한 것인지,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 결과 비의도적 혼입인 경우에는 인증 취소 등의 별도의 처분 없이 개선 명령만을 내리게 된다.

2) 인증 절차 및 표시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유기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가공업자, 또는 유기식품을 유통하는 소분업자 및 수입업자가 유기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절차는 <그림 2>와 같다.

생산자 및 가공업자, 소분업자, 수입업자가 유기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생산 및 가공, 취급에 관련된 기록과 인증마크의 입출고 관리를 담당하는 인증마크관리책임자(格付擔當者)가 필요하다. 가공업자나 소분업자, 수입업자는 업체 직원 가운데 1인을 인증마크관리책임자로 선정하며, 생산자의 경우는 본인이 인증마크관리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인증마크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습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강습회의 내용은 주로 유기식품관리제도 및 체크시트 작성법, 사례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습회 비용은 강습회의 참가자가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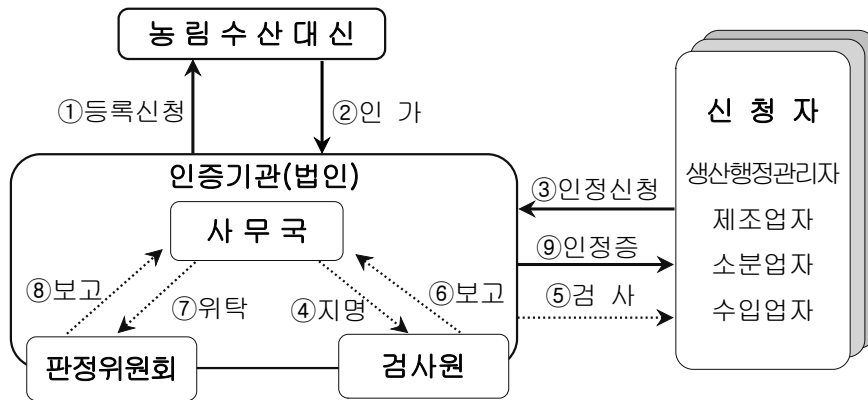
인증은 1년마다 갱신하며, 재배포장 및 시설·설비관리 방법, 기록, 생산·가공·취급 이력 등의 점검을 위해 인증기관은 연 1~2회 정도 인정사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수수료는 인증기관마다 다르며, 신청비와 검사비를 징수하는 방법과 판매액에 대한 로열티로 징수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방문조사를 실시한 JONA(Japan Organic and Natural Foods Association)의 경우는 인증수수료를 대신해 회원의 회비와 운영협력비(인증 로열티),

2)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JAS법(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에 관한 가공식품품질표시 기준 제7조 제1항 및 신선식품품질표시기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농림수산물대신이 정한 기준) 및 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2001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으며, 의무표시 대상은 대두, 옥수수, 감자, 유채, 면화씨, 알팔파, 사탕무 등이다. 이들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및 유통관리를 분별해서 하고 있지만, 일정부분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혼입은 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분별생산유통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대두와 옥수수에 한해서 5% 이하의 「비의도적 혼입」을 인정하고 있다.

인증 신청비 등을 징수하고 있다. 정회원의 연회비는 법인이 120,000엔, 개인이 12,000엔이며, 준회원은 법인 36,000엔, 개인 6,000엔 등으로 회원구분과 운영형태,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운영협력비는 회원의 매출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0.1~0.5% 사이에서 결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 가운데 인증실적이 가장 많은 효고현유기농업연구회의 경우 인증수수료를 유기농산물 생산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 소분업자로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공업자가 개인일 경우 신청료 및 확인료는 신청품목 1품목당 45,000엔(신청품목이 1품목 증가함에 따라 5,000엔 추가), 법인일 경우는 1품목당 55,000엔이며, 검사료 및 조사료는 20,000엔과 검사원 교통비(실비)를 징수하고 있다.



<그림 2> 유기JAS법에 근거한 인증절차

인증수수료는 민간 유기농업운동단체인 일본유기농업연구회와 각 현단위의 유기농업연구회 가운데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단체의 경우가 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인증전문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인정사업자의 인증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지만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의 인증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 표시 양식 및 방법은 「음식료품 및 유지의 인증표시 양식 및 방법」(2006년 5월 12일 농수고 제692호)에서 정하고 있다. 본 고시에 따른 유기JAS마크는 <그림 3>과 같으며, 마크의 하단에는 인증기관명을 기재한다.

유기JAS마크는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사료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유기」, 또는 「오가닉」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외국에서 수입된 농산물 또는 농산물가공식품에 영어로 「Organic」 또는 「ORGANIC」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 제5조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의 일본농림규격 제5조에 규정하는 「유기」 또는 「오가닉」 등의 일본어 표기와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

아 유기JAS마크를 붙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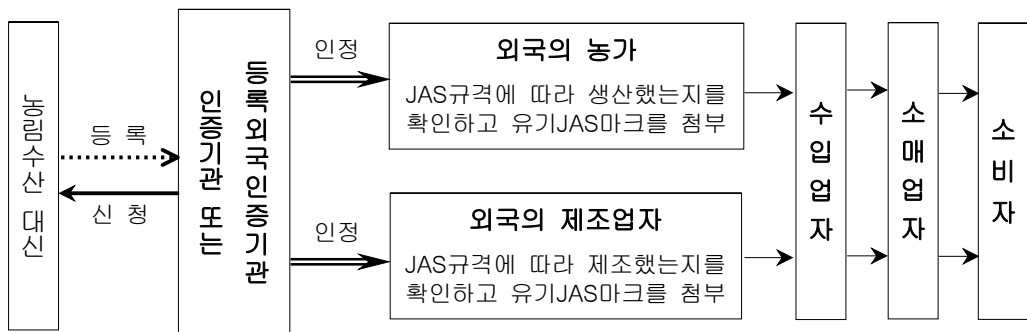
〈그림 3〉 유기JAS마크

3. 수입 유기식품의 관리 방법

외국에서 생산된 유기식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유기JAS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기식품을 수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는 국내 인증기관 또는 등록외국인정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외국 제조업자 등이 생산, 제조한 유기식품에 유기JAS마크를 첨부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이다. 둘째는 일본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수입업자가 유기JAS마크를 첨부해서 유통시키는 방법이다.

1) 외국 인정사업자가 JAS인증을 취득, 유기JAS마크를 첨부하는 방법

이 경우는 유기JAS 규격에 따라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외국의 농가 또는 외국의 가공식품 제조업자가 일본 농림수산대신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 또는 등록외국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유기JAS마크를 붙여 유통시키는 방법이다. 인증기관이나 등록외국인정기관은 사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 이외의 외국(일본을 제외)에서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생산행정관리자 등을 인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인



자료 : 農林水産省消費・安全局. 「有機食品の検査認証制度について」 農林水産省. 2006.

〈그림 4〉 외국 인정사업자가 JAS인증을 취득, 유기JAS마크를 첨부하는 방법

을 받은 수입업자가 수입해 유기JAS마크를 첨부한다.

4. 외국과의 동등성 인정 현황

1) 동등성 요건 및 인정 현황

동등성 관련 규정은 외국으로부터 유기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JAS법 제15조의 2 제2항³⁾을 근거로 일본농림규격에 의한 인증제도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 한해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동등성 인정 규정은 JAS법을 개정하면서 정책 담당자 동등성 관련 규정을 삽입하면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등성 인정의 경우 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그 복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동등한 수준’이란 「인증제도와 그 적절한 운용의 담보조치」와 「인증표시의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이 JAS제도와 동등한 수준에 있을 것, 대상이 되는 농림물자에 관한 규격이 일본농림규격과 동등할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수준을 말한다.

JAS법 제15조의 2를 근거로 농림수산성령에서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해서 일본농림규격의 인증제도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2009년 말 현재 EU 15개국(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호주, 미국,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스위스 등 20개 국가이다. 현재 20개국 이외에 인도, 이스라엘,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과 동등성 인정을 위한 협의가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의 동등성 인정은 일방적인 인정으로 일본과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는 나라는 없는 상황이다.

동등성 인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등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협정 대상국이 신청 요청을 하면 일본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게 된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일본의 유기JAS 기준이 자국의 유기식품 기준과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본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동등성을 인정받게 된다. 단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호 동등성이 아닌 일방적인 동등성이 인정이 된다.

동등성 심사를 요청할 시 요구하는 서류는 ①요청국으로부터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앞으로 보내는 유기지정농림물자의 동등성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 ②유기지정농림물자에 관한 법령 및 기준(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면 생략이 가능함), ③인정 체제 및 유기규격의

3) JAS법 제15조의 2 제2항에는 “전 항의 증명서는 외국(당해 지정농림물자에 대해서 일본농림규격에 따른 인증제도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나라에 한함)의 정부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따라 발행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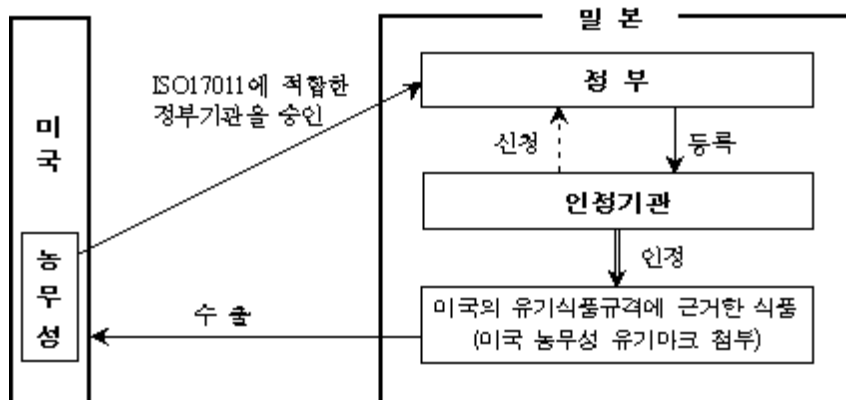
규정에 관한 「일본농림규격에 의한 인증제도와 동등의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심사기준(2000년 10월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제정)에 근거한 비교표, ④ISO17011 적합 심사표, ⑤유기지정농림물자의 인정·검사 및 표시제도에 관한 표, ⑥유기지정농림물자의 생산 및 무역에 관한 데이터(대일본 수출에 한함) 등이다.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 가운데 일본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는 해당국의 정부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일본 국내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수입업자가 유기JAS마크를 붙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2) 미국과의 동등성 인정 현황

2008년 6월 미국은 2002년 1월 일본에서 제안한 유기식품에 대한 미국국가유기계획(National Organic Program; NOP)과의 동등성 인정 요청에 대해 일본의 유기인증제도가 NOP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었음을 알려왔다. 동등성 인정 요청은 ISO17011(인증기관을 인정하는 기관의 일반요구사항)의 기준에 근거한 적합성 신청 양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인정이라 함은 유기JAS 규격이 NOP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농무성이 일본이 ISO17011에 의거해서 기준·인증 수속을 밟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NOP에 따라서 생산된 유기식품으로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유기에 관한 일본의 기준·인증시스템이 ISO17011에 적합하다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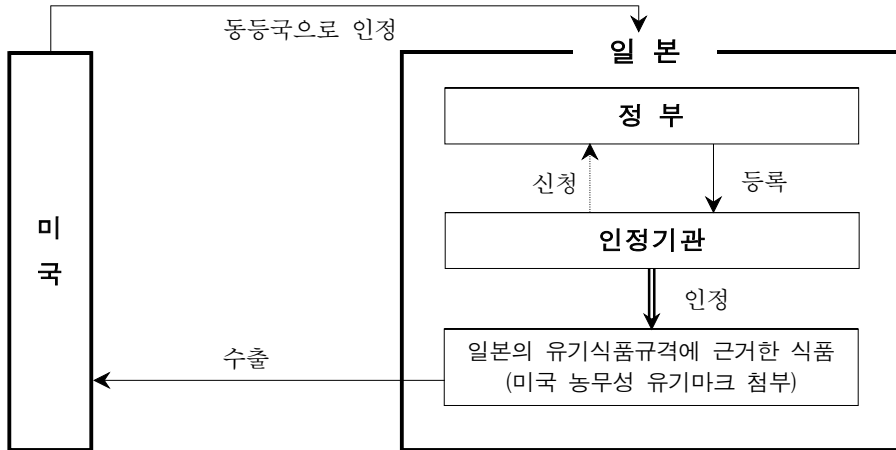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무규정, 심사원 등의 준비가 필요한데 현재 일본농림수산성의 준비 부족으로 실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림 6> 인증을 이용한 수출방법(일방 인정(recognition))

일본에서 생산되는 유기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은 ①일본의 기준 및 인증시스템이 ISO17011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는 방법<그림 6>과 ②미국의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동

등국으로 인정을 받는 방법<그림 7> 등 두 가지가 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유기인증제도가 NOP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①을 인정했다.



<그림 7> 동등성을 이용한 수출방법(상호 인정(equivalence))

따라서 ①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유기식품의 수출이 가능해 졌다. 이 방법에서는 인정기관이나 유기식품의 인증방법은 NOP에 따른 기준(규격)이 되며, JAS법에 근거한 인정기관의 등록기준과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의 인증방법과는 다르다. 따라서 현재 JAS법에 근거한 인정기관 및 인정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미국에 유기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NOP 기준에 따른 농림수산대신의 등록과 그 인정기관에 의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과의 사이에서 기술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조정이 끝나면 구체적인 운용방법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Ⅲ. 유기식품 생산 및 인증 현황

1. 인증 농가수 및 사업자 인증 현황

2009년 5월말 현재 유기JAS규격에 의해 인증을 받고 있는 인증농가 및 사업자 수를 보면 <표 2>와 같다. 국내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유기농산물 인증농가 수는 3,821호이며, 제조업자는 1,020건, 소분업자는 750건 등이다. 특히 해외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제조업자 인증건수는 678건으로 전체 제조업자 인증건수의 40%를 차지해 외국에서 생산되는 유기가공식품의 수입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인증 농가수 및 사업자 건수(2009년 5월말 현재)

(단위 : 건,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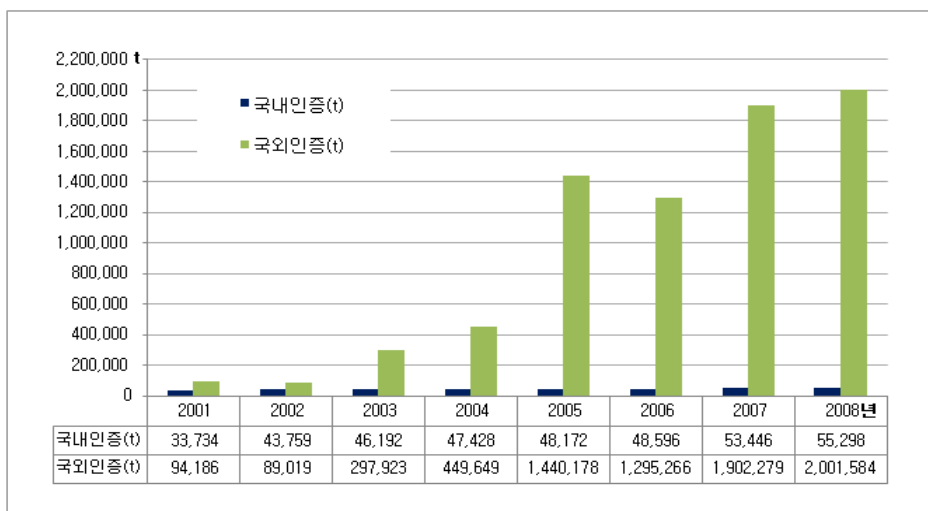
| 구 분 | 생산자 | | 제조업자 | | 소분업자 | | 수입업자 | | 합계 | 농가수 | |
|-----|-------|-------|-------|-------|-------|-------|------|-------|-------|-------|-------|
| | | % | | % | | % | | % | | | % |
| 국 내 | 1,990 | 75.0 | 1,020 | 60.0 | 759 | 75.2 | 156 | 100.0 | 3,925 | 3,821 | 100.0 |
| 해 외 | 662 | 25.0 | 678 | 40.0 | 249 | 24.8 | - | - | 1,589 | - | - |
| 계 | 2,652 | 100.0 | 1,698 | 100.0 | 1,008 | 100.0 | 156 | 100.0 | 5,514 | 3,821 | 100.0 |

주 : 해외농가의 경우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음.

자료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현(縣)별 유기인정사업자수(2009년 5월말 현재)」를 참고로 작성

2. 유기농산물 인증 현황

최근 외국에서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유기JAS 인증이 증가하면서 수입되는 외국산 유기농산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도에 일본의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은 총 2,056,882톤이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이 2,001,584톤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해 외국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에서 인증을 받아 수입한 사탕수수의 양이 급증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최근 몇 년간 매년 100만 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은 55,298톤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국내인증 유기농산물의 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 농림수산성. 認証事業者に係わる格付実績(2001~2008)을 정리하여 작성

〈그림 8〉 연도별 유기농산물의 인증실적 추이

〈표 3〉 유기농산물 인증 실적(2007, 2008년도)

(단위 : t)

| 구 분 | 2007 | | 2008 | |
|-----------------------|--------|---------------------|--------|---------------------|
| | 국내 인증 | 해외 인증 ¹⁾ | 국내 인증 | 해외 인증 ¹⁾ |
| 채 소 | 32,780 | 82,451 | 35,928 | 173,819 |
| 과 수 | 2,199 | 157,415 | 2,050 | 93,863 |
| 쌀 | 10,828 | 2,863 | 11,278 | 13,896 |
| 보 리 | 721 | 10,170 | 883 | 83,230 |
| 대 두 | 986 | 94,574 | 1,318 | 93,878 |
| 기 타 두 류 | 238 | 23,578 | 186 | 25,424 |
| 잡 곡 류 | 40 | 4,369 | 62 | 25,241 |
| 녹 차(잎차) ²⁾ | 1,702 | 83 | 1,754 | 255 |
| 홍 차(잎차) | 8 | 881 | 6 | 587 |
| 커 피 원 두 | 0 | 4,802 | - | 7,676 |
| 넛 즈 류 | 0 | 7,987 | - | 8,263 |
| 사 탕 수 수 | 35 | 1,442,352 | 25 | 1,366,243 |
| 구 약 (곤 약) | 1,373 | 2,132 | 1,104 | 869 |
| 팜 열매(palm fruits) | 0 | 61,709 | - | 64,833 |
| 기 타 농 산 물 | 2,537 | 6,913 | 1,333 | 43,509 |
| 합 계 | 53,446 | 1,902,279 | 55,298 | 2,001,584 |

주 : 1)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의 대부분은 주로 외국에서 유기농산물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외국에서 소비되거나 일본 이외의 국가로 수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음.

2) 녹차는 잎을 따서 썬 말린 상태로 상품화하기 전의 것을 말함.

3) 해외에서 인증된 기타농산물에는 알로에 등이 포함.

자료 : 농림수산성. 「平成20年度認証事業者に係わる格付実績」을 참고로 작성

품목별로 보면 국내인증에서는 채소류가 35,928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쌀이 11,278톤, 과수가 2,050톤 등의 순이다. 해외인증에서는 사탕수수가 1,366,243톤으로 가장 많으며, 외국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축산물의 전체 인증물량은 4,664톤이며, 이 중 국내인증이 59.8%(2,788톤)로 해외인증보다 약간 많다. 인증 유기축산물을 품목별로 보면 생유가 4,591톤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란이 73톤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8년도 현재 전체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JAS인증 유기농산물의 비중은 전체 농산물 평균 0.18%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 보면 기타농산물을 제외하면 녹차가 1.84%로 가장 높고, 대두가 0.50%, 채소 0.22%, 쌀 0.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인증 현황

2008년에 JAS인증을 받은 전체 유기가공식품은 262,378톤이었으며, 이 가운데 국내인증이 135,531톤으로 전체의 51.7%, 해외 인증이 126,847톤으로 4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해외 인증 물량이 다소 감소했는데 이는 설탕의 인증량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가운데 두부가 66,233톤(전체 국내인증 유기가공식품의 4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두유가 22,623톤으로 16.7%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간장, 낫또, 기타 대두가공품 등의 대두 가공품과 곤약 등과 같이 외국에서 가공해 수입하기 어렵고, 일본인의 식생활에서 자주 이용되는 품목에 대한 유기JAS 인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의 경우는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공식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설탕과 당밀 등 당류의 변동이 심하며, 설탕의 경우는 전년도에 85,804톤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21,036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2008년도에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가운데 당밀 및 기타 당류가 38,695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서는 삶은 채소가 12,366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유기가공식품 인증 실적(2007, 2008년도)

(단위 : t)

| 구 분 | 2007 | | 2008 | |
|-----------|-------|---------------------|-------|---------------------|
| | 국내 인증 | 해외 인증 ¹⁾ | 국내 인증 | 해외 인증 ¹⁾ |
| 냉 동 채 소 | 348 | 4,725 | 197 | 8,298 |
| 채 소 통 조 립 | 21 | 4,510 | 12 | 3,433 |
| 삶 은 채 소 | 635 | 6,002 | 636 | 12,366 |
| 기타 채소가공품 | 1,082 | 5,361 | 1,497 | 3,725 |
| 과 실 음 료 | 4,401 | 11,713 | 1,833 | 8,141 |
| 기타 과실가공품 | 869 | 4,629 | 811 | 4,445 |
| 채 소 음 료 | 1,051 | 401 | 1,391 | 241 |
| 차(茶)음료류 | 3,490 | 137 | 3,815 | 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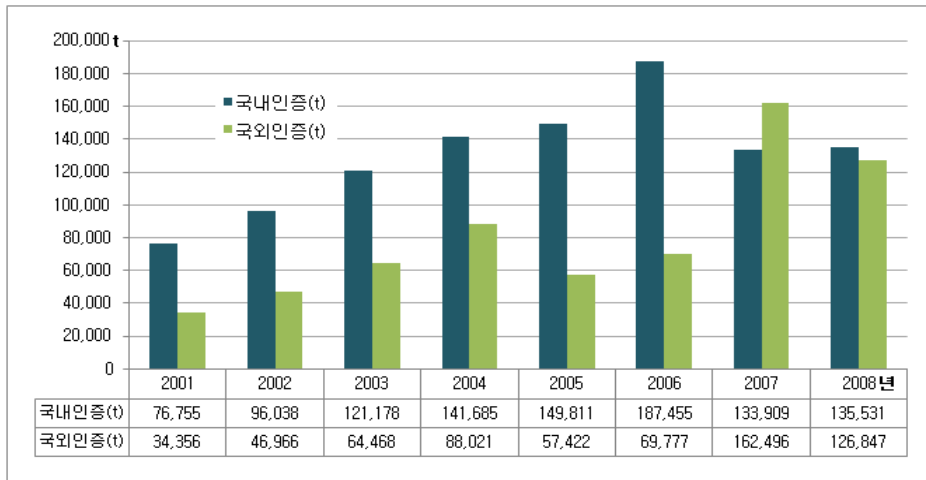
| 구 분 | 2007 | | 2008 | |
|------------|---------|---------------------|---------|---------------------|
| | 국내 인증 | 해외 인증 ¹⁾ | 국내 인증 | 해외 인증 ¹⁾ |
| 커피 음료 | 10,472 | 35 | 1,307 | 0 |
| 두 유 | 18,832 | 30 | 22,623 | 18 |
| 두 부 | 55,181 | 0 | 66,233 | 0 |
| 낫 또 | 7,722 | 141 | 4,965 | 0 |
| 된 장 | 3,004 | 856 | 3,123 | 685 |
| 간 장 | 5,444 | 0 | 6,104 | 1,211 |
| 땅콩 제품 | 1,333 | 1,475 | 118 | 875 |
| 기타 대두가공품 | 5,186 | 1,362 | 3,471 | 4,135 |
| 건 면 류 | 139 | 1,403 | 113 | 3,651 |
| 녹 차 | 1,231 | 230 | 1,657 | 269 |
| 커피 원 두 | 3,053 | 325 | 5,182 | 1,564 |
| 넛츠 류(nuts) | 1,068 | 3,476 | 1,056 | 3,151 |
| 곤 약 | 2,949 | 993 | 3,221 | 734 |
| 우 유 | 430 | 2,308 | 741 | 0 |
| 설 탕 | 22 | 85,804 | 24 | 21,036 |
| 기타 가공식품 | 5,944 | 28,888 | 5,401 | 48,855 |
| 합 계 | 133,909 | 164,804 | 135,531 | 126,847 |

주 : 1) 해외에서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에는 외국에서 소비된 것과 일본 이외로 수출한 것도 포함.

2) 2008년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에는 당밀 및 기타 당류(38,695톤)가 포함.

자료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및 「平成18年度有機農産物等の格付実績」을 참고로 작성

유기가공식품의 연도별 인증추이를 보면 <그림 9>와 같다. 유기식품에 대한 의무인증이 시작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인증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국내와 해외를 합한 전체 유기가공식품의 인증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에 비해 2007년도에 해외인증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설탕의 해외인증이 크게 증가한 까닭이다. 2006년도에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설탕은 14,657톤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85,804톤으로 무려 485%가 증가하였다.



자료 : 농림수산성. 認証事業者に係わる格付実績(2001~2008)을 정리하여 작성

<그림 9> 연도별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의 인증실적 추이

4. 인증기관(인증기관) 현황

2006년 3월 1일부터 JAS법이 개정되어 인증기관의 자격을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ISO/IEC GUIDE 65)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격 이상의 기관으로 변경하면서 인증기관을 둘러싼 상황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등록 자격을 ISO/IEC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 규정하면서 행정의 재량권은 작아지면서 인증기관의 책임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JAS법 개정 이전의 인증기관은 농림수산대신의 대행기관이었지만, 현재는 민간 제3자 기관으로서 주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래의 업무와 함께 인증 취소 등의 처분도 인증을 해 준 인증기관이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신(新) JAS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6년 2월말 현재 인증기관의 수는 102개 기관(국내 78, 해외 24개 기관)이었다. 이들 기관은 2006년 2월 28일부로 자격을 상실하고, 2006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받고 있지만, 많은 기관은 신법 이전에 인증기관으로 인가를 받았던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말 현재 유기식품을 인증하기 위해 등록된 인증기관 수는 80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국내의 인증기관이 65개소, 등록외국인정기관이 15개소이다. 국내 인증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지자체⁴⁾ 등 다양하다.

4) 도도부현(都道府縣) 등의 지자체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어(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JAS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인증기관이 될 수 있다. 인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역시 민간인증기관과 마찬가지로 농림수산대신의 등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JAS법 시행규칙 제39조에 규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09년 10월 현재 인증기관으로 등록된 지자체는 기후현(岐阜県),

이 가운데 NPO법인이 24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이 14, 주식회사가 10 사단법인이 8, 지자체 6, 유한회사 2, 농협 1개소 등이다.

2006년 JAS법 개정을 통해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되었다(개정 전은 5년간).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는 4년 이내에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등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의 4에 의해 양도와 승계가 가능하다. 인증기관이 인증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거나 다른 인증기관과 합병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은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IV. 요약 및 시사점

이상으로 일본의 유기식품 인증 현황 및 관리제도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최근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가 정부의 농업 및 식품 정책의 중요한 골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유기식품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0년 ‘개정JAS법’의 시행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특별재배농산물의 관리가 분리되었고, 2001년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유기JAS기준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유기식품에 대한 의무인증제도가 시작되었다.

2008년도에 유기JAS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은 총 2,056,882톤이었으며, 이 중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이 2,001,584톤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해 외국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인증량은 총 262,378톤이었으며, 이 중 국내인증이 135,531톤으로 51.7%, 해외 인증이 126,847톤으로 48.3%를 차지해 국내인증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인증량은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유기가공식품 가운데에서는 두부, 두유, 낫또, 간장, 된장 등의 신선 및 발효 대두가공품의 인증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유기JAS기준에 의거해 일본 국내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유기농산물은 전체 농산물의 0.18%에 그치고 있다. 2006년 12월 유기농업추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산물의 국내생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모델타운 사업’ 등의 시행을 통한 생산 환경 기반구축 확대와 지산지소(地產地消)의 추진, ‘식육(食育)기본법’의 제정(2005년)을 통한 학교급식의 확대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및 수요

돗토리현(鳥取県), 후쿠시마현(福島県), 이시카와현(石川県), 츠루오카시(鶴岡市), 아야쵸(綾町) 등 6개 지자체이다.

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유기JAS 제도와 유기식품의 생산 및 인증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개선 방향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 유기식품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관리제도의 개선이다. 20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신규인증이 폐지되면서 그 대상이 무농약과 유기농산물로 되었다. 향후 유기농산물을 통합된 유기식품 관리제도에 편입시키게 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사실상 무농약농산물만이 대상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유기농산물 생산으로의 전환 잠재력이 있는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무농약 이하의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유기농산물과 특별재배농산물의 구분 관리제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규격·인증제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관리제도의 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현재 일본은 농림수산식품에 관련된 규격 및 표시 업무를 JAS법 틀 안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운영에 있어서도 JAS법을 관리하는 일원화된 부서의 운용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농림수산성에서 JAS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소비안전국의 「표시·규격과」와 「식품표시·규격 감시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수산식품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인증제도가 있지만 관련 법률 및 담당부처·부서가 달라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리고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에 관해서는 소비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인증제도는 통합하고, 인증 및 규격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규격과(가칭)’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기농산물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유기가공식품산업의 활성화이다. 최근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유기식품 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가공식품의 생산은 유기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조절 및 부가가치 제고에도 기여한다. 유기가공식품은 원료의 생산이 국내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 원료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소비가 많은 두류가공식품 등의 원료농산물은 국내에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반 가공식품과는 속성이 다른 유기가공식품의 가공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학관연이 연계한 연구기반 조성 등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식품 유기제품에 대한 관리제도 마련이다. 최근 유기농산물의 새로운 변화로 유기 화장품, 유기 섬유, 유기 주류, 유기 완구류 등 비식품 유기제품의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식품 유기제품의 비약적인 성장에 힘입어 유기농시장 역시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기식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기농산업의 확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2006년 유기농업추진법 제정을 계기로 일본의 유기농업 추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유기농업추진법 이후의 일본의 유기농업 추진 동향 및 이와 보조를 맞추며 추진 중에 있는 환경보전형농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목·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 : 2010. 6. 7. 논문수정일 : 2010. 6. 19. 최종논문접수일 : 2010. 6. 25]

참 고 문 헌

1. 김창길·이용선·이상건. 2008.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성향과 마케팅 전략. 농업전망 2008 (I): 177-203.
2. 鄭萬哲. 2002. 有機農業の展開における自治体農政の役割に関する研究. 神戸大学博士論文.
3. 한국식품연구원. 2009. 국내 식품인증제도 통합운영(가칭 KAS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4. 한국식품연구원. 2009.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조사.
5. 農林水産省. 2009. 有機農産物のJAS規格.
6. 農林水産省. 2008. 有機に係る日本の基準・認証の仕組のISO17011への適合が米国から認証されたことについて(<http://www.maff.go.jp>).
7. 農林水産省. 2007. 有機食品の検査認証制度について.
8. 農林水産省. 2006. 改正JAS法について.
9. 農林水産省. 2006. 有機加工食品のJ A S規格.
10. 農林水産省. 2006. 有機飼料のJ A S規格.
11. 農林水産省. 2006. 有機畜産物のJ A S規格.
12. 農林水産省. 2006. 有機農産物及び有機飼料(農産物)についての生産行程管理者等の認定の技術的基準.
13. 農林水産省. 2006. 有機加工食品及び有機飼料(加工)についての生産行程管理者等の認定の技術的基準.
14. 農林水産省. 2006. 有機畜産物についての生産行程管理者等の認定の技術的基準.
15. 農林水産省. 2006. 有機農産物·有機加工食品·有機飼料及び有機畜産物の小分け業者等の認定の技術的基準.
16. 農林水産省. 2006. 有機農産物及び有機農産物加工食品についての輸入業者의 認定의 技術

的基準.

17. 農林水産省. 2006. 有機農産物・有機加工食品・有機飼料及び有機畜産物の生産行程についての検査方法.
18. 兵庫県有機農業研究会. 2006. 有機認定業務のご案内. 登録認定機関・特定非営利活動法人兵庫県有機農業研究会
19. 兵庫県有機農業研究会. 2004. 有機JAS制度と有機認定申請の方法. 登録認定機関・特定非営利活動法人兵庫県有機農業研究会.
20. 兵庫県有機農業研究会. 2003. 有機農業の原理と認定業務マニュアル. 登録認定機関・特定非営利活動法人兵庫県有機農業研究会.